

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-1호

행정처분(과태료)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(구 건설기술관리법)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(2명)

성명	소재지	처분사항
천○웅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김○홍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48번길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- 처분의 원인사실 : 이수기한 내 교육·훈련 미이수 혐의
- 과태료 250,000원(법정기준 500,000원, 1/2감경)
- 납부기한 : 2022. 2. 27.(월)
- 근거법령 :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(과태료)
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(과태료의 부과기준)

3. 유의사항

-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,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양식]

이 의 제 기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이의신청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제출 내용	①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 견	
기 타		

이의신청인은 20 귀 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,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이의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

유 의 사 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